

의안번호	제33호
의결 연월일	2026년 4월 22일 (제337회)

심 의 의 결 사 항
-------------------

금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심정수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6. 4. 8.

# 금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호
----------	------

발의연월일 : 2026. 4. .

발 의 자 : 심정수·송영천  
정옥균·박병훈  
최명수 의원

##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2026. 1. 2.)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별표에서 여비 지급 기준을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별지 위촉장 서식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별표 여비 지급 기준 정비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부군수 상당액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라목 적용

### 나. 별지 위촉장 문구와 서식 정비

다. 그 밖의 인용 조문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2026. 4. 9. ~ 4. 16.

## 금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별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조”를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 중 여비의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라목 적용
--------------------------------------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③ (생략)</p> <p>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p> <p>③ (생략)</p> <p>④ 일비와 여비의 금액은 <u>별표</u>에 따라 지급한다.</p> <p>제10조(일비의 계산)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일비 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u>제8조</u>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별표 1</u> -----.</p> <p>제10조(일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9조제 2항</u>----- --.</p>
---	---

# 위촉장

소속

성명 ○ ○ ○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0000회계연도 금산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금산군의회의장 ○ ○ ○ 직인

## **붙임**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b>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b> ,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